

의안번호	제 985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25년 5월 30일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의안 번호	985
----------	-----

제출연월일 : 2025년 5월 30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2024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 집행결과인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에 대한 승인

2. 주요내용

- 세입·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세입 결산액	세출 결산액	잉 여 금
계	7,839,592	7,351,478	488,114
일 반 회 계	7,096,632	6,619,002	477,630
특 별 회 계	742,960	732,476	10,484
소방특별회계	348,672	341,949	6,723
의료급여기금	341,281	341,129	152
농어촌개발기금	13,851	10,765	3,086
학교용지부담금	1,614	1,598	16
광역교통시설	2,967	2,790	177
충청북도균형발전	32,815	32,557	258
지역자원시설세	1,760	1,688	72

- 기금 현재액 : 1,271,022백만원
-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
 - 공유재산 : 9,722,173백만원, 물품 : 130,003백만원
- 채권·채무 현재액
 - 채권액 : 445,570백만원, 채무액 : 1,148,135백만원

3. 의안전문 : 별 첨

- 2024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 각 85부
-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85부
- 2024회계연도 지역통합재정통계보고서 85부

4. 관계법령 발췌 : 붙 임

-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결산승인)
- 지방회계법 제14조(결산의 수행)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7조(공유재산의 현황 작성 등) 및 제62조(물품의 현황 작성 등)

□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결산승인)

법 제150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의 회기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지방회계법 제14조(결산의 수행)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에게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 ② 감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③ 지방의회는 감사위원의 실명을 공개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의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산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산업무의 기준·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감사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7조(공유재산의 현황 작성 등)**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유재산에 대하여 전년도 및 해당 회계연도 간 증감보고서와 매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개정된 가격에 따른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2조(물품의 현황 작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물품에 대하여 전년도 및 해당 회계연도 간 증감보고서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